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 
조례안  
(이학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-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 
발의자 : 이학래, 김윤정, 김효식,  
백남환, 서종수, 이봉수

## 1. 제안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음주청정지역 지정, 안내판 설치 및 그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음주예방 교육, 홍보 및 계도활동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음주예방 교육지원과 교육 및 홍보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 등 홍보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는 주류광고 및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

**록 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**

마.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위  
촉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바.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에 구민, 시민단체 및 기업 등  
의 참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**3. 관계법규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**

**4. 조례안 : 붙임**

**5. 예산조치 : 해당없음**

**6. 기타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7. 5.10. ~ 5. 14.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폐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건전한 음주문화”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.
- “음주청정지역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2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
3. 관내 버스·택시정류소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**제5조(청소년 보호)**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, 홍보,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**제6조(교육 및 홍보관 설치 등)**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

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

**제7조(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)**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·잡지 및 방송·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,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,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8조(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)**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("자원봉사단체"를 포함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9조(구민의 참여 등)**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·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령

## 국민건강증진법

[시행 2017.4.18.] [법률 제14777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

**제8조(금연 및 절주운동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·홍보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·연구를 하는 범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삭제

④ 「주세법」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.

⑤ 삭제

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,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